

2023년도 제7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4. 6.(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6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84건(안전번호 제2023-15650호~15753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15650호~15653호는 웹하드 및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15654호~15753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7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III.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71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6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023-63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B 위원: 발언 취지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함.
- 오진해 전문위원: 위원님들 의견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음.
- C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제2023-63회 제2호 안건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우리 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쪽 수 기재 후 비공개함이 타당함.
- 참석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대해 발언 취지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고,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쪽수를 기재하여 비공개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1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8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3-15650호~15753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5650호~15653호는 권리자(실명 1인) 및 민원인(실명 1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및 블로그에 게시된 출판·영상(영화)의 불법복제물 총 5건임.

(안전번호 제2023-15650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웹하드에서 출판물 ‘♥♥♥ ♥♥♥’을 제공 중임. 저작물 전체를 .txt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3-15653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블로그에서 영상(영화) ‘♣♣♣ ♣♣♣♣♣♣ ♣♣♣♣♣♣: ♣♣♣♣♣♣ ♣♣ ♣♣ ♣♣♣♣♣♣’를 제공 중임. 전체분량 1시간 36분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전번호 제2023-15650호~15653호의 5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5650호~1565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5650호~15653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3-15654호~15753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방송 ‘(드라마)썸바디’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5656호는 웹하드에서 ‘(드라마)썸바디’를 270 포인트에 판매 중임. 2022. 11. 18에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된 드라마임.
(방송 ‘(드라마)만달로리안’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5671호는 웹하드에서 ‘(드라마)만달로리안’을 판매 중임. 2023. 3. 8.부터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임.
(만화 ‘(만화)세인트 영맨’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5743호는 웹하드에서 ‘(만화)세인트 영맨’을 60 포인트에 판매 중임. 2008. 1. 23부터 일본에서 연재중인 출판 만화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3-15654호~1575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전번호 제2023-15654호~15753호는 모두 불법 복제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5654호~15753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15650호~15653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5654호~1575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7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7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4. 13.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